#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상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136

발의연월일: 2021. 5. 17.

발 의 자:이상헌·장철민·강병원

김홍걸 • 문진석 • 홍정민

김정호 · 양정숙 · 김민석

신동근 · 이용호 의원

(119]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 시행령은 체육진흥투표권의 단위 투표 금액은 1천원 이하로 하고, 발행회차별 1인당 총투표금액은 10만원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 으나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조항은 따로 없음.

한편, 복권은 「복권 및 복권기금법」에 따라 10만원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어 같은 장소에서 판매되는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해서도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와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으며,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에 대하여도 구매제한 의무 및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시 1인당 발행회차별 총투표금액 10만 원을 초과하여 판매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명시하고, 이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체육진흥투표권의 무분별한 구매로 인한 사행성 조장의 위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(안 제30조제5항·제6항 및 제30조의2 신설 등).

###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의 제목 중 "구매"를 "판매 및 구매"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수탁사업자는 체육진흥투표권 구매자 1명에게 발행회차별로 총투표금액 10만원을 초과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⑥ 체육진흥투표권 구매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판매되는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30조의2(체육진흥투표권 판매 관련 위반행위 조사) ①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은 제30조제5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.
  -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사업자에게 체육진흥투표권 관계 서류·장부·사업보고서 등의 자료 또는 그 사본의 제출을 요구하거나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는 시설 및 장소에 출입하여 그 설비, 장부, 그 밖의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출입·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.

법률 제17580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55조제1항 중 "제18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제3항을 위반하여 징계 관련 정보를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재한 체육단체 등에는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제2항 중 "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가금 납부 관련 서류를 계정관리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제18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징계 관련 정보를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재한 체육단체 등
- 2.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나 그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 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·조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
- 1.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가금 납부 관련 서 류를 계정관리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
- 2.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1명에게 판매 한도를 초과하여 체육진흥 투표권을 판매한 자

1의2. 제30조제6항을 위반하여 판매되는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한 자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	개 정 안
제30조(체육진흥투표권의	<u>구매</u>	제30조(체육진흥투표권의 <u>판매</u>
제한 등) ① ~ ④ (생	략)	<u>및 구매</u> 제한 등) ① ~ ④ (현
		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	⑤ 수탁사업자는 체육진흥투표
		권 구매자 1명에게 발행회차별
		로 총투표금액 10만원을 초과
		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
		<u> 여서는 아니 된다.</u>
<u> &lt;신 설&gt;</u>		⑥ 체육진흥투표권 구매자는
		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판매
		되는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하
		<u>여서는 아니 된다.</u>
<u>⑤</u> (생 략)		<u>⑦</u> (현행 제5항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	제30조의2(체육진흥투표권 판매
		관련 위반행위 조사) ① 문화
		체육관광부장관은 제30조제5항
		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할
		<u>수 있다.</u>
		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
		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
		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
		수탁사업자에게 체육진흥투표
		권 관계 서류・장부・사업보고

법률 제17580호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17580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

제55조(과대료) ① 제18조의13제2 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징계 관련 정보를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재한 체육단체 등 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대료를 부과한다.

<신 설>

서 등의 자료 또는 그 사본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는 시설 및 장소에 출입하여 그 설비, 장부, 그 밖의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출입·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. 법률 제17580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

1. 제18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

위반하여 징계 관련 정보를

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

게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

### <신 설>

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 4항을 위반하여 부가금 납부 관련 서류를 계정관리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<신 설>

#### <신 설>

- ③ (생 략)
-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(생 략) <신 설>

로 게재한 체육단체 등

- 2.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나 그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·조사를 거부·방해 또 는 기피한 자
- ②
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
   해당하는
   -----

- 1.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4 항을 위반하여 부가금 납부 관련 서류를 계정관리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로 제출한 자
- 2.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1명

   에게 판매 한도를 초과하여

  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한 자
- ③ (현행과 같음)
- 4 -----
- -----.
- (현행과 같음)
   1의2. 제30조제6항을 위반하여

	판매되는 체육진흥투표권을
	구매한 자
2. ~ 4. (생 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